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 정하는 부과금액에 일정한 제한 설정(안 별표3)
-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고, 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 이상에서 설정하며, 과태료 위반차수를 3차 이하로 정함
- 나. 화재조사에 따른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별표3)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시행령

의 화재조사에 따른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안 별표3)

- 과태료가 감경처분의 대상인 경우,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라.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3)

-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없다”를 “없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 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3 제2호의 과태료 금액(만원)란 중 “4회 이상”을 삭제하고 같은 란 중 “3회”를 “3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의 과태료 금액(만원)란 중 “50”을 “100”으로, 같은 란 중 “100”을 “150”으로, 같은 란 중 “150”을 “200”으로, 같은 란 중 “200”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1)의 과태료 금액(만원)란 중 4회 이상란의 “200”을 삭제하며, 나목2)의 과태료 금액(만원)란 중 “50”을 “60”으로, 같은 란 중 “100”을 “120”으로, 같은 란 중 “150”을 “200”으로, 같은 란 중 “200”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의 과태료 금액(만원)란 중 “20”을 “50”으로, 같은 란 중 “50”을 “100”으로, 같은 란 중 4회 이상란의 “100”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의 과태료 금액(만원)란 중 “50”을 “100”으로, 같은 란 중 “100”을 “150”으로, 같은 란 중 “150”을 “200”으로, 같은 란 중 “200”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의 과태료 금액(만원)

란 중 4회 이상란의 “500”을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의 과태료 금액(만원)란 중 4회 이상란의 “100”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차목을 자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연 락 처	(044) 205 - 7471